

보도자료

2009년 3월 4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과장(2770)
[보고안건]
가. 전파정책기획과 양환정과장(2210)

2010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08. 10월, 법제처)에 따라 위치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 ▶ 전파법 개정(진성호의원 발의, '09.2.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첨부]

위치정보의 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처분 및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함

- 위반의 횟수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 허가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구체화함

위 반 행 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법13조 제1항 제1호)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폐지		
2.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13조 제1항 제2호)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의 취소 사업폐지	- -
3. 관리적·기술적 조치 미이행 (법제 13조 제1항 제4호) 등 2개 규정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4.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법13조 제1항 제6호) 등 3개 규정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 고의·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한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함

※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부과

-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정지 일수) × (관련 매출액의 6,000분의 1)]로 규정

☞ 과징금 상한액 : 관련 매출액의 3/100, 사업정지 최대일수 : 6개월(180일)

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함

○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함

위반행위 유형	과태료 상한액	위반횟수별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허가조건 위반(법 제5조제4항)등 5개 규정	2,000	600	1,200	2,000
각종 신고 위반(법 제10조제1항)등 17개 규정	1,000	300	600	1,000
통계자료(법 제32조) 미제출자	500	150	300	500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함